

평창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71
----------	----

제출년월일 : 2022.11.16.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평창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시행에 대한 걱정을 기하고 건설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실공사 예방과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시정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가.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견실시공을 도모하며 평창군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
- 나. 부실방지 시책마련 및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품질 및 안전 관리 실시 규정 마련(안 제4조, 제5조, 제6조)
- 다. 부실공사 신고 접수 및 처리, 부실 측정 및 벌점부과 등 규정(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 라. 입찰참가 제한 등, 포상, 현황관리, 부실공사 신고 접수 및 처리, 부실 측정 및 벌점부과 등 규정(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 제55조, 제62조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1) 입법예고(2022. 9. 30. ~ 2022. 10.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2022.9.8. 기획실-12727)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2.9.8. 기획실-12727)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 없음(2022.9.27. 가족복지과-37287)
- 5) 개인정보 사전검토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신설(2022.9.20. 행정과-21749)

평창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건설시공을 도모하며 평창군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2. “부실공사”란 제1호의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해서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했거나 우려가 있는 공사를 말한다.
3. “부실별점”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가목에 따른 부실내용별 별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평창군(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평창군이 설립한 공단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부실방지 시책 마련)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실방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의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① 군수는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장점검 실시 전 점검자 및 피점검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에 청렴서약을 자필기재하고 서명 후 점검을 시작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계약과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병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5조, 제9조에 따른 현장점검과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 보존이 필요할 경우 부실시공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때에 건설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품질 및 안전관리) ① 군수는 법 제55조와 제62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관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해서 품질시험 및 검사와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부서의 장이 부담해야 한다.

제7조(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군수는 부실공사의 신고 및 접수·처리를 위하여 건설 업무를 총괄하는 주무부서에 부실공사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센터의 장은 건설 업무를 총괄하는 주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부실공사 신고접수) ① 부실공사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현장 위치와 발견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와 우편, 홈페이지 접수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해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않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그 사항을 접수하지 않는다.

제9조(부실공사 신고 처리) ① 센터는 제7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즉시 현장을 보전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과 함께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② 센터는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부실을 방치하는 것이 품질 확보와 공기(工期) 등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부실공사 여부의 판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록과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발주부서의 장의 확인을 거쳐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부실측정 및 부실벌점부과) ① 점검결과 법령위반 사항 등 부실이 발견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피점검자에게 징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확인서에는 피점검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다만, 피점검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서명거부임을 명시하고 점검자가 서명할 수 있다.

② 피점검자가 제1항의 확인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점검일 이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점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점검자는 이의제기 내용을 고려하여 부실책정을 한다.

③ 그 밖에 부실측정과 부실벌점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11조(입찰참가 제한 등) 군수는 부실벌점을 부과 받은 업체와 건설기술자 등에게 입찰참가 자격의 사전심사를 하는 때에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불이익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

제12조(포상) 군수는 법 제54조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점검에서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 건설공사

의 부실 방지에 공로가 큰 업체와 건설기술자 등을 발굴하여 「평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현황관리) 현장점검 결과와 포상 등의 사항은 기록·관리하여 건설기술용역평가와 시공평가 등에 반영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평창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청 렬 서 약 서 (제5조제2항 관련)

공사명:

(점검자)

위 에 대한 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수행하겠으며, 점검과 관련하여 적발된 사항을 묵인 또는 은폐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및 향응 등 점검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아래 글을 자필로 따라적이고 서명하십시오.(○○○에는 자신의 이름을 기재)

나 ○○○는 서약을 지키며 청렴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서명)

(피점검자)

위 에 대한 점검을 수검함에 있어 성실하게 점검에 임하겠으며, 점검과 관련하여 적발된 사항을 묵인 또는 은폐 등의 목적으로 금품수수 및 향응제공 등 수검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아래 글을 자필로 따라적이고 서명하십시오.(○○○에는 자신의 이름을 기재)

나 ○○○는 서약을 지키며 성실하게 점검에 임하겠습니다.(서명)

20 년 월 일

점검자대표: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수검자대표: 소속 직급 성명 (서명)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직장, 직급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위한 청렴서약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보유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것으로 간주하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행정조치 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구분	동의여부	서명(또는 인)	날짜	비고
점검자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년 월 일	
수검자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년 월 일	

평창군수 귀중

부실공사 신고접수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부실공사 신고접수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부실공사 신고 접수 및 처리, 사후관리	신고접수 후 1년까지 ※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할 수 있음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고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중

확인서 징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확인서 징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직장, 직위	확인서 징구	확인서 징구 후 1년까지 ※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할 수 있음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것으로 간주하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행정조치 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구분	동의여부	서명(또는 인)	날짜
현장대리인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년 월 일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자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년 월 일

평창군수 귀중

이의제기서 제출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피점점자가 확인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제출하는 이의제기서 제출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직장, 직위	건설공사 부실 확인 및 사후관리	이의제기서 제출 후 1년까지 ※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할 수 있음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이의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구분	동의여부	서명(또는 인)	날짜
현장대리인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년 월 일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자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년 월 일

관계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3조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5. 5. 18., 2018. 12. 31., 2019. 8. 27.>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을 점검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발주청은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결과(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31.>

③ 발주청(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인·허가기관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로 인하여 안전사고나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그 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현장 등을 점검하여야 하고, 그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 8. 27.>

④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을 점검하는 자는 점검의 중복 등으로 인하여 그 건설공사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31., 2019. 8. 27.>

⑤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12. 31., 2019. 8. 27.>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30.>

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

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14., 2019. 4. 30.>

③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19. 4. 30.>

④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기준·승인 절차,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확인 방법·절차와 그 밖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 12. 31., 2019. 4. 30., 2020. 6. 9.>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31., 2019. 4. 30.>

③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31.>

④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31., 2019. 4. 30.>

⑤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4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31., 2019. 4. 30.>

⑥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출·승인의 방법 및 절차,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및 안전점검 대가(代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8. 14., 2018. 12. 31., 2020. 6. 9.>

⑦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주청(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31., 2019. 4. 30.>

⑧ 제7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31.>

⑨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받은 종합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31.>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할 수 있으며, 적정성 검토 결과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8. 12. 31., 2019. 4. 30.>

⑪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5. 1. 6., 2018. 12. 31., 2019. 4. 30.>

⑫ 관계전문가는 가설구조물이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5. 1. 6., 2018. 12. 31.>

⑬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건설공사 참여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하는 안전관리체계와 수행하여야 하는 안전관리 업무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15. 5. 18., 2018. 12. 31., 2019. 4. 30., 2021. 3. 16.>

1.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3.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⑭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15. 5. 18., 2018. 12. 31.>

⑮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5. 5. 18., 2018. 12. 31.>

<16>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정보망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 관련 협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5. 5. 18., 2018. 12. 31.>

<17>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5. 5. 18., 2018. 12. 31.>

<18>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3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8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① 법 제5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개정 2016. 1. 12., 2018. 1. 16., 2020. 5. 26.>

1.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재해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건설공사

2.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건설공사

3. 인·허가기관의 장이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점검을 요청하는 건설공사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발주청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발주청이 건설공사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자신이 발주한 건설공사 및 허가등을 한 건설공사로 한정한다.<개정 2016. 1. 12.>

③ 법 제5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신설 2020. 1. 7.>

1. 안전사고나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대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일 것

가.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 및 가설구조물

나. 건설공사로 인한 지하 10미터 이상의 굴착지점

다.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천공기, 향타·향발기 및 타워크레인

라. 건설공사의 인근 지역에 위치한 시설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나 의견을 첨부할 것

가. 파손, 균열 및 침하 등으로 인한 심각한 안전사고나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 파손, 균열 및 침하 등에 대한 도면, 사진 및 영상물 등 구체적인 자료

나. 건설공사의 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박사·석사 학위 취득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 및 그 밖의 관계 전문가의 안전사고나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의견

④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발주청은 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한 결과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경우에는 법 제53조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3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원자력시설공사의 현장에 대한 검사를 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6. 1. 12., 2020. 1. 7., 2020. 5. 2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의 공사중지

가.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법 제5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주요 구조부의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다. 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2.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의 진단 및 이에 따른 시정조치

3. 건설공사현장의 출입구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의 설치

⑤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발주청은 제4항제1호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을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공사중지기간이 끝난 때에는 지적사항 시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서면으로 공사재개를 명해야 한다.<신설 2020. 5. 26.>

⑥ 제4항제3호에 따른 표지판은 시정조치 등이 완료될 때까지 설치해야 하며, 누구든지 표지판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0. 1. 7., 2020. 5. 26.>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①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로 한다.<개정 2014. 11. 11., 2020. 5. 26.>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 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②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한다. 이 경우 품질시험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은 별표 9와 같다.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원자력시설공사와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0. 1. 7.>

④ 품질관리계획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인 케이에스 큐 아이에스오(KS Q ISO) 9001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① 발주청은 제98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같은 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 제62조 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야 한다.<개정 2019. 6. 25., 2020. 12. 1.>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보고서(이하 “설계안전검토보고서”라 한다)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신설 2019. 6. 25., 2020. 12. 1.>

1.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2. 설계에 포함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국토안전관리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외뢰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발주청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신

설 2019. 6. 25., 2020. 12. 1.>

④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검토의 결과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보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⑤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9. 6. 25.> [본조신설 2016. 1. 1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8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①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발주청은 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기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건설공사현장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안전사고의 발생, 발생 우려 또는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경우로서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점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6. 3. 7., 2016. 7. 4., 2019. 2. 25., 2020. 3. 18.>

1. 점검 근거 및 목적
2. 점검일시
3. 점검자의 인적사항(소속·직급 및 성명)
4. 점검내용

② 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는 자(이하 “점검자”라 한다)는 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른 점검요원증을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개정 2016. 3. 7.>

③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한 점검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점검방문 일지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 등을 적어야 한다.<개정 2016. 3. 7.>

④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현장점검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 및 시험성과표 등 관련 자료를 점검자에게 제시해야 하며, 점검자가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 3. 7., 2019. 2. 25., 2020. 3. 18.>

⑤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발주청은 건설공사현장 등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점검에 참여시킬 수 있다.<개정 2016. 3. 7.>

⑥ 영 제88조 제3항 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이란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부설시공현장 표지를 말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장점검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신설 2016. 3.>

제49조(품질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 영 제89조 제3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조경식재공사
2. 삭제<2016. 7. 4.>
3. 철거공사

제5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의 제정으로 인한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경제건설국 건설과 건설과장 심재호
연락처	(033) 330 - 2863